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7월 8일, 백선희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9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백선희의원)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은 국제 협력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전략적 기술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외부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인적 요소에 내재된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서덕교)

- 개정안들은 방산업체가 외국인 등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함.
- 다만, 다음의 통합·조정 논의가 필요함.
 - 근거 법률: 「방위사업법」 vs,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사업법」 제35조에서는 보안요건 등을 고려한 방산업체 지

정 및 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0조의2에서는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등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방산업체가 전략무기사업 등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이 점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의 내용을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함.

- 승인의 대상: 직원 및 복수국적자 포함 여부

① 외국인 직원 채용의 경우 이미 현행 제도에서도 외국인 채용에 따른 보안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방산업체의 직원 채용까지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면 방산업체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임원 선임’에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②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인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의 위험성은 여전하므로 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 승인의 목적: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 vs. ‘국방과학기술’ 유출방지
국방과학기술이 방위산업기술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그 범위 확정
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방위산업기술은 엄격한 지정 제도로 운영
되어 그 범위가 명확하므로 임원 선임 승인의 필요성으로 ‘방위산

업기술의 외국유출 금지'가 보다 적절하다고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방산업체가 외국인 등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으로 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